

	<h2 style="margin: 0;">간호학과운영규정</h2>	규정번호	3-3-20
		제정일자	2014. 3. 1.
		개정일자	2026. 3. 1.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간호학과 의 운영규정 내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학의 제 규정이 이 규정에 우선하며 간호학과 내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과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적용된다.

제3조(준수의무) 간호학과 교수, 조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교육과정

제4조(교육과정 편성) ① 간호학과 교육과정은 대학의 학칙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교과목 이수 체계에 근거하여 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교양 교과목은 학생이 졸업 시까지 25학점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하며, 기초, 필수, 선택의 이수 구분별로 전공교과목을 균형 있게 이수하고 일정 비율 이상 전공선택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개정 2025.3.1.)

③ 전공기초 교과목 중 인문사회과학 교과목은 8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한다.

④ 실습교과목 학점 당 이수 시간은 실습실 교육은 1:2, 임상실습 교육은 1:3으로 운영하며, 임상실습 교과목은 최소 22학점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단, 임상실습의 일부를 시뮬레이션 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 최대 6학점 이하로 편성한다.

제5조(교육과정 개선) ① 교육과정개선은 간호학과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여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의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으로 결정한다.

② 교수, 학생, 임상현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질 관리 체계를 갖추고 4년 개선 주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며 필요에 따라 개선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 3 장 수업, 성적평가, 장학 및 졸업

제6조(수업 및 성적평가) 수업운영 및 학업성적 평가는 대학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따른다.

제7조(장학) 교내·외 장학생 선정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학과 교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8조(졸업이수학점) 졸업이수학점은 교양필수 및 선택 25학점 이상, 전공기초 중 인문사회과학 교과목 8학점 이상,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을 포함하여 최소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3.1.)

제8조2(진급 및 유급 기준) ① 학년 진급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 가능하다.

② 간호학과 교과과정표에 따라 해당 학기마다 연계하여 이수해야 하는 전공필수 교과목을 하나라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 처리하며, 유급된 학생의 해당 연도 취득 학점은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26.3.1.]

제 4 장 교원

제9조(교원 초빙) ① 전임교원은 간호사 면허 소지, 박사 학위 소지, 임상경력 3년 이상의 학술 역량과 현장 전문성을 갖춘 자를 자격 조건으로 한다.

② 비전임교원(겸·초빙 교원, 강사) 자격 조건은 담당 전공교과목의 수업 지도를 위해 요구되는 해당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③ 제1항, 2항은 총장의 위촉으로 한다.

제10조(교수시간) ① 간호학과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주당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의 시수는 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론수업은 1학점 당 1시간을 1시수로, 교내실습수업은 1학점 당 2시간을 2시수로, 임상실습수업은 1학점 당 3시간을 3시수로 각각 인정한다.

제11조(학생지도) ① 간호학과 전임교원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서 배정된 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지도를 담당한다.

② 학업, 학교생활 적응, 진로 및 취업 지도를 위해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학생 지도를 시행한다.

③ 학생 자치활동 운영을 지도한다.

④ 지도교수는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및 정신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의 동의 시 교내 상담 전문인력에 의뢰하고 연계 상담을 진행한다.

제 5 장 위원회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 간호학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과정위원회, 교내실습위원회, 실습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취업지도위원회, 학습성과위원회 및 발전위원회평가준비위원회를 둔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의 간호학과 교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은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제 6 장 학과장의 책무

제13조(학과장의 임무) ① 간호학과 학과장은 간호학과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등 간호학과 운영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책임을 진다.

② 간호학과 학과장은 간호학과를 대표하여 학교 운영관련 각종회의 등 정책결정, 의사결정 등에 참여한다.

③ 간호학과 학과장은 간호학과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본부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대학 본부의 정책을 간호학과 구성원에게 전달하고 정책을 수행한다.

④ 간호학과 학과장은 간호학과를 대표하여 대외 활동에 참여하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한다.

⑤ 기타 간호학과 학과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관련하여 학과장의 책무로 판단되는 사항을 총괄하고 책임을 진다.

제 7 장 행정직원 및 조교

제14조(조교의 구분 및 임무) 학과조교와 실습조교로 구분하고 학과조교는 일반행정조교, 실습행정조교로 구분하며, 각 조교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행정조교는 학사에 필요한 사무, 학생지도, 장학업무와 관련된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실습행정조교는 실습교육에 필요한 사무 및 행정업무, 교외실습 행정, 취업관리, 홍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실습조교는 실험실습교육, 교내실습에 필요한 실습 교육과 보조, 기자재와 실습실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4. 세부적인 업무규정은 조교업무 매뉴얼을 준한다.

제15조(자격) 조교는 대학이 정하는 자격에 준한다.

제16조(임용) 조교의 임용은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처우) 조교의 급여 및 휴가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2.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간호학과 운영규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 편성 및 졸업이수학점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2항 및 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